

심사보고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17
----------	-----

2019. 7. 19. (금)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2019년 7월 1일

다. 회부일자: 2019년 7월 3일

라. 상정일자: 2019년 7월 10일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양개석)

가. 제안이유

○ 학생 대표의 회의 참석을 통한 학생 의견 수렴, 위원의 임기 개시일
구체화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학교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의 임기개시일 구체화(안 제4조)
- 정당인의 자격제한 규정 삭제(안 제5조)
- 학생(자녀)이 졸업하는 학부모위원의 자격상실 시기 조정(안 제7조)
- 학생 대표의 회의 참석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 학교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 부여(안 제10조의2)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경분)

- 본 개정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에 따라 학생 대표의 ‘제안’ 과 ‘회의 참석 및 의견 청취’ 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 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로 관할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안 제9조의2제2항에서는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등 8개 항목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 에 관하여 학생 대표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0조의2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로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시정명령’ 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아울러, 학교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4월 1일’ 로 명시하고, 정당인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는 학교운영위원 직을 유지하도록 하였음
- 본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인 운영과 같은 바람직한 취지를 담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점에 비추어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 7. 10. / 김영주 의원
- 수정이유
 조례의 개정안 중 제7조제1호 단서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직을 유지한다.” 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수정내용
 - 개정안 제7조제1호에 신설되는 단서부분 삭제

8. 소수의견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규정으로 정한다.”를 “4월 1일로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직을 유지한다.

제8조제1항 중 “영 제59조제5항”을 “영 제59조제6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제5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14호”를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14호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항제10호”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운영위원회는 영 59조의4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

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 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위원의 임기) ① (생략)</p> <p>② <u>위원의 임기개시일은 규정으로 정한다.</u></p>	<p>제4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4월 1일로 한다.</u></p>
<p>제5조(위원의 자격) ① (생략)</p> <p>② <u>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교원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u></p> <p>③ (생략)</p>	<p>제5조(위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위원의 퇴임 등) <u>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u></p> <p>1. <u>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u> <u><단서 신설></u></p> <p>2. (생략)</p>	<p>제7조(위원의 퇴임 등) ----- ----- ----- -----.</p> <p>1. ----- ----- ----- -----.</p> <p><u>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직을 유지한다.</u></p> <p>2. (현행과 같음)</p>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영
제59조제5항에 따른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
며, 연임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9조(심의사항) ① 「초·중등
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따
라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9조의2(의견 수렴 등 방법)

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
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
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
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영
제59조제6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제5항-----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심의사항) ① 「초·중등
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14호 및 「유아교
육법」 제19조의4제1항제10호--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의견 수렴 등 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
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
령」 제22조의8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
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
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신 설>

② 재학생대표는 학교생활에 관련된 머리모양, 복장, 학칙개정, 교내외축제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로 정한 방법

<신 설>

<신 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로 정한 방법

④ 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
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에 따
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
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
청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3호, 2017. 3. 21., 일부개정]

□ 제32조(기능) ①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 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5. 9. 15.>

④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00. 2. 28., 2015. 9. 15.>

⑤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5. 9. 15.>

⑥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5. 9. 15.>

⑦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3. 18., 2015. 9. 15.>

□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61조(시정명령)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 2. 28.>

□ 유아교육법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7호, 2017. 2. 8., 타법개정]

□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 제22조의4(위원의 선출 등) ① 국립·공립 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7. 6. 13.>

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6. 13.>

⑤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6. 13.>

□ 제22조의8(의견 수렴)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8. 31.]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1호에 신설하는 단서부분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7조(위원의 퇴임 등) ----- ----- ----- -----.</p> <p>1. ----- ----- ----- ----- -----.</p> <p><u>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월 31 일까지 위원직을 유지한다.</u></p>	<p>제7조(위원의 퇴임 등) ----- ----- ----- -----.</p> <p>1. ----- ----- ----- ----- -----.</p>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삭제〉</p>

관 계 법 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0. 2. 28.>

1.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2.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이내
3.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이내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18.>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공립의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2., 2010. 6. 29.>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 3. 18.>